

KC마크의 안전 불감과 과제

김명열* · 강경식**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Insensitivity Towards Safety and Tasks of KC Mark (Korea Certification Mark)

Myeong-Yeol Kim* · Kyung-Sik Kang*

*Department of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MYONGJI University

Abstract

KC Mark is one of the country's integrated legal force to the minimum mandatory certification mark system for safety. That is absolutely needed for manufacturing and sales of goods in Korea.

This thesis intended to see what is prevalent for both imports and domestic products for illegal and defect and rebuild the ecosystem as soon as possible for the healthy development through public awareness.

In this theses point out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based on the various kinds of press releases, data of KCA(Korea Consumer Agency), MOTIE(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CA(Korea Customs Service) to the problem of certification system of KC mark and propose a solution to that issu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make befit the nation's place in the worl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possible about the system of certification KC. This study expect more research on this issue in order to make enhance the confidence of KC mark

Keywords : KC mark, certification system, illegal and defect rate

1. 서론

KC마크는 우리나라의 통합된 하나의 법정강제인증 마크로써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부여하던 13개의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 한 국가 통합인증마크이다. 이는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증으로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규정에 대한 인증이다. 모든 상품분야가 다 인증대상은 아니나 우리 주변의 많은 부분은 인증대상이라고 보여 지며 대상 제품들은 안전 등 강제규정에 대한 규

격을 준수하고 공인기관 인증을 받아야만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은 CE마크, 일본은 PS마크, 중국은 CCC마크가 나라별 하나의 법정강제인증마크로 우리나라의 KC마크와 같은 성격이라 하겠다.

KC마크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규정이라 언급 하였으나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방한용품 2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불합격으로 나왔으며 불합격제품 중 낡은 기준치의 30배, 어떤 항목은 기준치의 150배가 넘는 제품도 있었다.

†Corresponding Author : Kyung-Sik Kang, Industrial and Engineering, Myongji University, Yongin 449-728, Korea, E-mail : kangks@mju.ac.kr

Received January 14, 2016; Revision Received March 18, 2016; Accepted March 23, 2016.

어린이 방한용품은 한 예로 들었는데 이보다 못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이 우리생활 주변에 만연해 있다고 하면 모두는 처음에 믿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입품이나 국산품 가리지 않고 만연돼있는 불법·불량품에 대한 현주소를 알아보고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게 하여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치에 걸맞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KC인증 제도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불량품에 대한 각종 보도자료, 소비자원 접수사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의 최근 적발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비교적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더욱 안전해야할 전기전자제품과 어린이용품을 통하여 KC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안전성 문제제기 위한 이론적 고찰

시중에 판매중인 KC 인증제품의 품질이 업체마다 차이가 나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제품이 불법·불량제품으로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한국소비자원의 접수사례와 한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통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2.1 한국 소비자원 접수 사례 분석

2015년 하반기에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2015년 7월 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형광등 기구 관련 위해사례 767건을 분석하였는데 무려 93.4%인 716건이 형광등기구가 원인이 된 화재사고였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안정기·전선과 같은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부하로 인한 과열이 62건(8.7%), 접촉불량이 43건(6.0%), 트래킹 43건(6.0%) 등의 순이었다.

화재발생 장소는 상가(316건, 44.1%)나 주택(236건, 33.0%)이 대부분이었고,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 거실이 504건(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 실외 간판이 148건(20.7%), 주방 및 욕실이 61건(8.5%) 등이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고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품 하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형광등기구 29개와 형광등용 안정기 40개 등 총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무려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제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임의 변경하거나 안전상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Table 1> Status of illegal and defect rate(fluorescent lighting fixtures)

item	number of samples	illegal and defect products	illegal and defect rate(%)
fluorescent lamp	29	16	55.2
ballast	40	19	47.5
total	69	35	50.7

<Table 2> Defect rate of KC mark as compared to status of certification

item	number of certification	inspection items	defect products	defect rate(%)
electric cigarettes	12	insulation function	11	91.6

결함내용을 보면,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되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형광등을 교체할 때 감전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였으며 전압이 필요이상 투입될 때 전기가 흐르거나 불꽃이 발생해 화재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였다. 또 형광등기구 12개와 안정기 15개 등 총 27개 제품은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KC마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종합적으로 사고방지와 사고 이후를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이다.

2.2 방송사 보도내용 분석

얼마 전 한 방송사가 뉴스를 통해 KC인증에 대한 허술함을 보도해 많은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수입된 중국산 전자담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방송을 통해 안전성이 부각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전자담배(부분품 포함) 수입량은 13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2%나 폭증했다. 2012년과 비교해서는 무려 10배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다. 금액도 100만 달러에서 1014만 달러로 10배 이상 늘었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상기 <Table 2>에서와 같이 전자담배의 경우에 국내 KC인증(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12곳이지만 이 중 단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연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결국 지금까지 KC인증기관에서 별다른 시험도 없이 KC인증을 내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3. 불법·불량품 심층분석과 처리기준

3. 항에서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적 우리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안전성을 분석해 우리나라 KC마크 인증에 대한 현주소를 보다 확실히 가늠해보고 문제점 적발 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시행하여 왔는지도 살펴본다 대책수립의 자료로 삼기로 한다.

3.1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사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 하반기에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결함이 발견된 26개 제품 가운데는 예를 들어 발열체, 자동온도조절기, 직물이나 기타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제품이 무려 19개 제품이었다. 이는 KC인증을 받는 시에 사용되었던 비교적 고가의 부품을 질이 떨어지는 불량한 저가의 부품으로 교체해 제품 원가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26개 불량제품의 종류별로는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가 23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성 시험, 온도 보증점 온도의 허용차, 감열선의 균일 특성, 컨트롤러 강도, 전기자기적합성 등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시험하게 되는데 어이없게도 전열기구 23개 제품 대부분에서 사업자가 주요부품(온도조절기, 전류퓨즈 등)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부적격 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의 경우는 부적합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커지는 문제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기매트와 전기요 등에서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발견되었다.

나머지 3제품 중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의 경우는 KC미 인증 전원전선을 사용해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앰프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나 절연이 파괴되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tatus of domestic products ratio from defective products among fluorescent lamp, electric sitting cushion & flooring

item	number of defect products	domestic products	ratio of domestic products (%)
fluorescent lamp	35	29	83
electric sitting cushion & flooring	26	19	73
total	61	48	78.7

<Table 4> Status of illegal and defect rate from imported products

sampling number	number of illegal and defect	ratio of illegal and defect (%)	volume(illegal and defect products)
1,085	501	46.2	1.16 million

이러한 제품들이 시중에는 KC 마크 인증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싸구려 외국산 때문이며 국산은 안전한 것인가를 위의 <Table 3>에서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전기방석·전기장판 불량제품 중 국산제품이 19개(73%)에 달했으며 이는 동년 하반기 불과 한 달 전 형광등 안전성조사에서도 35개 제품 중 29개(83%) 제품이 국산으로 드러나는 등 국내기업의 제품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마디로 불법·불량문제는 외산과 국산 모두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KC 인증 제도의 현 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2 불법·불량 조명기기·공산품 사례

2015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해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상기 <Table 4>에서와 같이 KC안전인증을 위반한 불법, 불량 제품을 무려 501건, 물량으로는 116만점이나 적발하였다.

불법제품이라 함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증미필), 인증 당시와 재질, 성능, 색상이 다른 제품(허위표시) 등을 의미하며, 불량제품은 유해물질 초과 검출,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다.

적발된 제품 501건 중 전기용품은 조명기기가 343건(68%), 공산품(어린이용품)인 완구가 95건(19%), 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품 또한 KC인증 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불량 조명기기는 화재 및 폭발, 감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장신구와 학용품이 있었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3 시중 형광등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69개 형광등 제품(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에 대한

제품안전성 조사결과를 지난 년 말 발표한 바 있다. <Table 1> 형광등 기구 불량률 현황 참조.

강판, 절연재료, 단자판, 나사, 소켓, 콘덴서, 글로스 타터, 점멸기 등의 재료의 적합성과 조도, 내충격성, 전자파장해측정, 소음, 전압조절기 온도측정, 내전압, 절연저항 등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35개(등기구 16개, 안정기 19개) 제품에 대해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해당 제품은 등기구 16개, 안정기 19개 등으로 제조국은 한국 29개, 중국 3개, 베트남 3개 등이다.

이 제품 중 KC마크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27개나 되었고 모두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되는 제품들이었다.

3.4 불법·불량제품 처리 기준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정도의 불량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리콜이 철저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심이 간다는 점이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서야 절반이 조금 넘는 약 55%의 소비자가 KC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산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연히 100% 가까이가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KC마크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어있지를 않다고 또한 보아야 할 것이다.

관세청은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중 통관보류중인 제품에 대해 반송·폐기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통관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KC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업체도 무려 16개(신고수령 11만점)나 되어 고발조치가 되는 등 논란의 여지 또한 많은 실정이다.

4. 검증결과와 대책

4.1 불법·불량제품 ‘숨방망이’ 처벌 개선

조정찬 입법 Q&A 대표는 서울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열린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에서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경제적 제재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제품안전과 관련된 처벌 현황을 소개하였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을 단속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총 418건 가운데 131건은 기소유예, 178건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18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돼 법망을 피해갔다. 또 벌금형을 받은 사건 중에 100만 원 이하는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이하는 32건, 300만 원 이하는 14건, 300만원 초과는 7건에 불과하였다.

현행법상 불법·불량제품을 생산·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기소된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숨방망이’ 수준의 형사처벌로는 불법·불량제품 생산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제품안전 제도를 분석해보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운영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엄벌주의, 무관용 주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형사처벌에 의한 제재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 보다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병행해 경제적 제재방안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2 불법·불량제품 통관상의 문제점 개선

앞서 언급한 조명업계를 예를 들면 중국산 저질 조명기기의 시장규모가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불법·불량 조명들은 쉽게 고장이 나고, 최악의 경우 화재, 감전 등 전기사고로 이어져 소비자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암세포처럼 퍼지는 저질 조명의 시장 확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에서 2015년 상반기에만 전체 조사대상 501건 중 343건의 조명기기 하자를 적발했다. 수량만 56만 3,000개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56만개가 넘는 불법·불량제품을 적발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관을 통과한 불법·불량제품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샘플링 숫자가 전체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세관을 통과하는 불법제품은 그보다 몇 십 배 많을 것이다. 협업검사의 샘플링 숫자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샘플링의 숫자만 확대하면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고, 또 통관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통관비용이 늘어나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기에 샘플링 숫자와 처벌강화를 적절하면서도 강력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수입 완제품에 대한 조사만 강화하거나 일부에선 비정상적인 싸구려 부품만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해 유통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통관단계 검사만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상기 사항을 고려한 서로의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확고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4.3 건전한 성장 위한 생태계 조성

최근 국내는 좀처럼 활성화하지 않는 시장분위기, 업체간 치열한 경쟁, 중국산 저가제품의 무차별 공습, 지지부진한 제품의 표준화 문제 등이 건전한 KC인증 제품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LED조명기구를 예를 들면, 동반성장위원회가 2015년 초 LED조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을 해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맺고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배경에서 출발한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중소기업 단체의 컨설팅, 공동사업화, 공동설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LED조명업계에선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 ‘LED조명기구의 인증 합리화방안’에 대해, 한국전동기구 LED산업협동조합이 ‘LED등기구의 불법·불량제품 근절방안’에 대해 각각 컨설팅을 받고 대응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 방안은 같은 해 11월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최초로 보고가 되었다.

이는 크게 중복인증제도의 개선과 불법·불량 조명기구를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LED조명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각종 시험인증비용이라고 밝혔다.

LED조명의 경우 세분화된 인증제도로 인해 인증빈도가 높고 성능과 무관한 제품변경에도 재시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동일한 제품인데도 수요처가 다르다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인증비용이 지출되는 행태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조합에서는 고시 또는 지침 개정을 통해 ▲고효율 각 품목의 모델인증범위를 KS와 같은 범위인증으로 변경하고 ▲시험비용과 직접 연관된 시료의 개수를 축소하며 ▲인증제도에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상호 불인정하는 모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는데 현재 KS, 고효율, 녹색인증, 서울시 기준, 도로공사 기준의 경우 시험항목 중복도 많고 제품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어 앞으로 수요처별로 새로운 인증제도나 시험규정을 만들 때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는 해당품목 공동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험중복, 인증중복 등을 검증하고, 시험결과를 공유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 서울시, 도로공사 등 개별적으로 공고·고시한 LED모듈, 컨버터 등에 대한 표준과 부품규격, 시험항목 등이 KS표준에 없어 수요기관과 제조업체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등기구조합이 컨설팅을 통해 수립한 불법·불량제품 근절방안의 결론은 ‘소비자와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요약되어 진다.

시중의 LED조명을 유통 전·후에 전수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생산·유통업자의 자정노력, 불법·불량제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고질적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조명기기를 포함한 불법·불량제품 적발업체는 2011년 333개, 2012년 380개, 2013년 469개, 2014년 58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등조합은 이에 따라 ▲홍보 및 예방 ▲적발 및 조치 ▲사후관리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대응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우선 홍보 및 예방 전략으로 현재 수입물품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의 합동검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 대상 결의대회,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배포, 단속결과 홈페이지 게시, 예방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 적발 및 조치방안으로는 제품검사 강화, 포상제도 도입건의, 수입물품 유통이력제, 민간 차원 시장감시원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조합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 불법·불량제품 신고처 표시와 상담원 교육, 사후감시를 위한 시험비용 경감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상기 내용들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으로 현실성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며 비록 LED조명기구를 예로 들었지만 타 업종제품도 사정은 비슷한 것이 많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5. 결론

KC마크가 도입된 지 6년이 되어가고 있고 2014년 한 해에만 2만 9천 건의 KC인증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도 KC마크를 보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전국소비자 5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1년 KC마크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2014년엔 71.2%가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절반(55%)을 약간 넘는 사람만이 공산품을 구입할 때 KC마크를 확인한다고 했고, KC마크를 확인한다는 300명(55%)중에서도 142명(47.3%)만이 KC표시가 없으면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산이나 수입품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산품은 거의가 KC인증 대상 품목인 바 대상품은 시중에서 100%의 인증 제품만이 유통 되어야 하고 소비자는 KC인증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믿고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의 현실은 소비자가 이를 잘 모르고 있으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관계기관의 국민에 대한 홍보가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또한 KC인증을 받았더라도 열거된 사례의 예처럼 불법·불량품이 국내에 심히 만연해 있는 상황을 볼 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노력 또한 미흡하였다고 본다.

KC마크가 도입취지에 맞게 제품안전도를 높이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제품안전에 대해 위반 시 엄벌주의, 무관용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운영하고, 형사처벌에 의한 제재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 보다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병행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경제적 제재방안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샘플링 숫자가 전체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세관을 통과하는 불법제품은 그보다 몇 십 배 많다고 보고 검사의 샘플링 숫자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샘플링의 숫자만 확대하면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고 통관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통관비용이 늘어나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기에 샘플링 숫자와 처벌강화를 적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수입 완제품에 대한 조사만 강화하니까 일부에선 비정상적인 싸구려 부품만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해 유통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통관단계 검사만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엄격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KC인증 제품에 대해 시험중복, 인증중복 등을 검증하고, 시험결과를 공유하는 제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도로공사 등 개별적으로 공고·고시한 LED모듈, 컨버터 등에 대한 표준과 부품규격, 시험항목 등이 KS표준에 없어 수요기관과 제조업체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서는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소비자와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KC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제에 대한 분석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과 어린이 이용품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것이 KC인증을 받은 제품 전체의 안전성 문제를 대표한다는 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타 제품군의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KC인증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많은 비슷한 사례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6. References

[1] Current Affairs Dictionary, Bangmungak.
[2] Yun Hee Jung(2015),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pose a Rogue Importers”, Cartnews. Articles/220448422940.
[3] Internet Marketing Team(2015), “Over Electronic Cigarettes Tax Local Safety Certification Procedures of KC, There are Only One Place a Properly Certified”, Digital Times. Articles/2015090802109923809038.
[4] Hospital Bestian(2015), “Half of the Fluorescent Lamps on the Market are in Danger of Fire or Electric Shock to Illegal, Defective Products”, Health Information for Burns. Sweetjhu.blog.me/220541805001.
[5] Electimes(2015), “Redundant Certified·Resolution of Illegal Products Should Create a Healthy LED Market”, Front Page of 9 Proposition No. 3159.
[6] Electimes(2015), “Report on the Clearance of Illegal, Bad Lighting Products Income”, Front Page of 9 Proposition No. 3137.
[7] Electimes(2015), “There is Still Unsatisfactory on Soft Punishment for Illegal”, Front Page of 10 Proposition No. 3157.
[8] Covering Files K(2015), “KC Mark, Safety Can Trust?”, KBS News. December 20, 2015.
[9] Kim Eun Kyung(2015), “Illegal, Faulty Electric Products·Intended for Children Products of 501 Cases Have Been Caught”, News.zum.com/articles/24222285.
[10] Song Jin Sik(2015), “26 Product Recalls, Including a Sitting Cushion and Flooring”, News.zum.com/articles/27368358.
[11] Lee Hye Rim(2015), “Half of the Fluorescent Lamps on the Market Were Defective Products...A Bad Sign in Fire and Electric Shock”, Newscj. November 15, 2015.

저자 소개

김명열



경희대학교 경영학 석사
(생산관리 전공)
현재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안전관리, 생산관리,
경영공학 등

강경식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
사석사박사와 연세대학교·경희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박사 취
득. North Dakota State Univ.
에서 Post-Doc과 Adjunct
Professor 역임. 현재 명지대학
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 주요 관심분야는 생산관리,
물류관리, 안전경영 등이다.